

- 위 치 : 제2처리장 전학코스 입구 침전지 옆 잔디밭
- 설치면적 : 18M×40M×1개소(720㎡)
- 조성규모
 - 인공연못 : 240㎡내외(폭8m×길이16m×깊이1~2.5m)
 - 저 습 지 : 40㎡(타원형 : 지름4~8 ; 수심 0.1~0.3)
 - ※ 처리수 유입펌프 : 수중펌프 60ℓ/분×2대
- 종 류
 - 양식어종 : 비단잉어, 금붕어 등 관상어(50~200마리 정도)
 - 재배작물 : 미나리, 수련, 연꽃, 부레옥잠, 갈대 등 수생식물
- 설치기간 : 2000. 2.10~4. 20
 - 터파기 및 벽면돌쌓기 : 2.10~2. 29
 - 주변조경 및 저습지 조성 : 3.10~3. 20
 - 관상어구입 및 수생식물이식 : 3.20~4.20
- 소요예산 : 15,000천원(일반운영비)
 - 재료비(자연석, 펌프 등) : 7,000천원
 - 인건비(돌쌓기 등 인부) : 5,000천원
 - 물고기 및 수생식물 구입비 : 3,000천원

建設局 主要懸案業務報告

**월드컵경기장주변 하천정비
(홍제, 불광, 난지, 향동천)**

2002 월드컵 행사에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의 하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코자 함

- 정비방향
 - 하천유지 용수를 확보하여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정비
 - 콘크리트 호안블럭을 초목이 서식할 수 있는 호안으로 정비
 - 고수부지에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하천으로 정비
 - 하천바닥에 징검다리를 설치하여 물가에서 놀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
- 정비개요
 - 공사기간 : 2000. 5~2001. 6(2000.3. 설계완

- 료)
 - 총사업비 : 200억원(불광·홍제천 70억원, 난지·향동천 80억원, 난지 빗물펌프장 : 50억원)
 - 정비구간
 - 불 광 천
 - 기본설계 : 전 구간(7.3km)
 - 실시설계 : 홍제천 합류부~신사오거리(4.5km)
 - 홍 제 천
 - 기본설계 : 전 구간(11.1km)
 - 실시설계 : 한강합류부~성산제2교(1.8km)
 - 난지천 : 기본 및 실시설계 : 전구간(2km)
 - 향동천 : 기본 및 실시설계 : 전구간(3km)
 - 하천유지용수 확보
 - 【홍제천, 불광천】
 - 지하철역사 지하수와 북한산 계곡수 총 6,500㎡/일
 - 연신내역 : 1,841㎡/일
 - 불 광 역 : 485㎡/일
 - 구 산 역 : 1,432㎡/일
 - 역 촌 역 : 1,942㎡/일
 - 계 곡 수 : 800㎡/일
 - 홍제천 상류 건천화로 계획
 - 【난지천】
 - 난지하수처리장 재처리수를 밀레니엄파크 습지호수에 사용후 난지천으로 방류 5,000㎡/일
 - ※ 평화의 공원에서 사용할 수량은 난지처리장의 재처리수 또는 한강 복류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 하상 정비
 - 저수로는 유수방향을 고려, 자연스럽게 굴곡처리(사행화)하여 옛날의 하천에 자생하였던 버들가지 억새등 초목이 다시금 되살아나 정감이 넘치는 하천으로 조성하며, 무성한 갈대숲과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가꾸어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을 조성코자 함.
- 국유하천 미분용지 보상계획**
- 보상 없이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84.12.31 하천법(부칙 제2조) 개정으로

<p>보상을 시행하여 왔으나 '90.12.30 보상청구권이 시효 만료됨</p> <p>○ 보상청구 시기를 놓친 토지주의 민원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데 따른 추가보상계획임</p> <p>○ 적용대상</p> <p>-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편입토지 중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자</p> <p>· 국가하천 : 한강, 안양천, 중랑천</p> <p>· 지방1급하천 : 청계천</p> <p>○ 보상기간 : 2000. 3.29~2002.12.31</p> <p>○ 보상재원(예정)</p> <p>- 국가하천 : 국비 3분의2, 지방비 3분의1</p> <p>- 지방1급하천 : 전액 지방비</p>	<p>※ 지방비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 이용</p> <p>○ 추진일정</p> <p>- 1999.12.28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p> <p>- 2000. 3.29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정 예정</p> <p>- 2000.4~2000.10 : 보상대상토지조사 및 확정</p> <p>- 2000.10.31 : 보상계획 수립</p> <p>- 2001. 1. : 예산확보 및 보상개시</p> <p style="text-align: center;"><u>합정로확장 추진현황</u></p> <p>□ 사업개요</p> <p>○ 규 모 : 도로확장 B=20→33~35m</p> <p>○ 기 간 : '99~2001</p> <p>○ 사업비 : 113,404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0%;">계</th> <th style="width: 10%;">'99</th> <th style="width: 10%;">2000</th> <th style="width: 10%;">장 래</th> <th style="width: 1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 style="text-align: right;">113,404</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td> <td style="text-align: right;">25,840</td> <td style="text-align: right;">77,564</td> <td rowspan="5"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 부족예산 720억원</td> </tr> <tr> <td>보 상 비</td> <td style="text-align: right;">104,154</td> <td style="text-align: right;">9,750</td> <td style="text-align: right;">22,390</td> <td style="text-align: right;">72,014</td> </tr> <tr> <td>공 사 비</td> <td style="text-align: right;">8,500</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3,250</td> <td style="text-align: right;">5,250</td> </tr> <tr> <td>설 계 비</td> <td style="text-align: right;">250</td> <td style="text-align: right;">250</td> <td></td> <td></td> </tr> <tr> <td>감 리 비</td> <td style="text-align: right;">500</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200</td> <td style="text-align: right;">300</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99	2000	장 래	비 고	계	113,404	10,000	25,840	77,564	※ 부족예산 720억원	보 상 비	104,154	9,750	22,390	72,014	공 사 비	8,500		3,250	5,250	설 계 비	250	250			감 리 비	500		200	300
구 분	계	'99	2000	장 래	비 고																												
계	113,404	10,000	25,840	77,564	※ 부족예산 720억원																												
보 상 비	104,154	9,750	22,390	72,014																													
공 사 비	8,500		3,250	5,250																													
설 계 비	250	250																															
감 리 비	500		200	300																													
<p>□ 보상추진현황(2000.2.7 현재)</p> <p>○ 기배정액 : 321억원('99년 : 97억, 2000년 : 224억)</p> <p>○ 보상협의를 : 409억원(예산대비 127%) 계약 완료</p> <p>□ 현안사항</p> <p>○ 월드컵 이전(2001.12) 사업완공을 목표로 연내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기 위해 전 구간에 대해 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나,</p> <p>○ 현재 진행중인 보상계약이 빠른 진척(2000년 예산계약완료)을 보이고 있어 부족예산(약 720억원)에 대한 조기확보가 요구됨</p> <p>□ 조치계획</p> <p>○ 부족한 보상예산에 대하여는 예비비와 타 도로사업예산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추경시에 보전하는 방안으로 추진</p> <p style="text-align: center;"><u>외환은행본점앞 도로부지 소송 추진현황</u></p>	<p>을지로 외환은행 본점~명동길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외환은행본점 부지에 대한이의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 제1심에서 패소, 원금 14,908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됨</p> <p>□ 계쟁토지 : 중구 을지로 2가 181-3 (외환은행 본점옆, 1,640㎡)</p> <p>□ 사건개요</p> <p>○ 외환은행 본점옆 현황도로의 일부(계쟁토지)를 서울시가 도로로 조성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은행측이 소송을 제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기이 지급하였음</p> <p>○ 향후의 과도한 부당이득금(연 10억원) 지급사유 해소를 위해 지난 '97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 토지 수용키로 결정하여('97.3.13), 공특법 절차에 의한 중앙토지수</p>																																

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결과에 따라 도로부지로 손실 보상하였음

- 은행측에서 사업시행자인 중구청을 상대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현황 지목인 '대지'로 평가 요구), 지난 2000.1.19 피고인 중구가 1심에서 패소함

□판결요지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 사건명 :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청구 ('98구 26237)
- 원고/피고 : 한국의환은행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 주문 : 1. 중구는 원고에게 금 14,907,633,63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쟁점사항

-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가 서울시의 시공에 의하여 20m 도로 일부로 이용되게 되었으므로 도로가 아닌 대지로 보아 보상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 이건 도로는 외환은행 본점사옥 신축시에 원고가 조성하여 건물준공과 함께 사용하게 된 도로이므로 공특별 규정에 의거,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사실상의 도로로 보고 인근토지 가격의 3분의1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 따라서 판결의 사실오인을 바로잡아 당초의 이의재결 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음

□조치계획

- 지난 2월 4일 항소 조치 완료
-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수행변호사로 선임조치 계획
- 판결금에 대해서는 원고측으로부터 중구청에 대해 강제집행이 예상되는바, 추후 시비 지원방안 검토

도로부지 보상관련 소송추진 현황

- 어린이대공원~천호대교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

라 임료상당의 판결금을 지급하게 된 소송추진현황 보고임

□계쟁토지 : 성동구 광장동 산81-13(도 10,688㎡)

□사건개요(원고 : 조석재, 피고 : 서울시)

- '77.12 준공된 어린이대공원~천호대교간 도로개설공사(노폭 50m)에 편입된 계쟁토지에 대하여 보상가격의 저렴을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토지주)가 지난해 5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임

□1심 판결요지 - 우리 시 패소

- 서울시가 수차에 걸쳐 보상금 수령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법률상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데 대한 임료상당의 재산상 손해액 649백만원을 지급하라
※ 서울시 항소표기 : 미불보상대상 토지로서 실익이 없음

□조치계획

- 소송촉진등에대한특례법에 따라 완제일까지의 이자가 연 25%의 고율인 점을 감안, 예비비에서 즉시 지급 조치
- 계쟁토지에 대하여는 미불보상예산을 사용하여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요지

1. 제출이유 검토

육교사용료징수조례에서 육교사용 허가시 장기간 정부시책 홍보 등의 경우는 사용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시책 이외의 시민의 행사 홍보활동 기회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조례안 제출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 개정조례안 검토

가. 조례안 제9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제2항의 개정안은 육교사용 허가시 정부시책 홍보 등의 경우는 육교사용 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장기간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정부시책 이외의 시민의